

영주시 공고 제2022 - 430호

「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 년 3 월 16 일

영 주 시



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법제처 ‘법령 정비 기준’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을 적용하여 조문 정비
- 나.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시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
- 다. 전자송달·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

2. 주요 내용

- 가. 법제처 ‘법령 정비 기준’에 맞추어 용어 및 표현 정비
(안 제2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0조제2항제1호, 제14조)
- 나. 관련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(안 제5조제1항제3호)
- 다. 상위법의 경감률 직접 명시에 따른 조문 삭제(안 제3조)

라. 감면사항 일몰제 적용기한 연장 ⇒ 2024년 12월 31일까지(3년 연장)

1)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(안 제2조제1항)

2)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(안 제9조)

마. 전자송달·자동이체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(안 제10조제1항)

1) 전자송달 세액공제 : 고지서 1장당 150원 → 500원

2) 자동이체 세액공제 : 고지서 1장당 150원 → 500원

3)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: 고지서 1장당 300원 → 1,000원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 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주 소 :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381, Fax(054)639-6389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3조 내지 제7조”를 “제3조부터 제7조까지”로 하고,
“2022년 6월 30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의4제1항제1호”를 “「수산
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150원”을 “5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
“300원”을 “1,000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병기된”을 “함께 부과된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적용되는”을 “적용될”로 하고 “제180조의 규정을”을 “제180조를”로
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따른”을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6조(감면신청 등) ①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④ (생략)

제16조(감면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제2항에 따라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